

高麗時期 徭役의 徵發構造

朴 鍾 進*

- | | |
|-------------------|-------------------|
| 1. 머리말 | 3. 徭役徵發의 構造 |
| 2. 徭役과 다른 부담과의 관계 | 1) 군현 차원 요역의 징발구조 |
| 1) 現物 부담과의 관계 | 2) 국가 차원 요역의 징발구조 |
| 2) 軍役과의 관계 | 4. 맺음말 |

1. 머리말

徭役은 국가가 민호으로 부터 아무 댓가없이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으로, 고려시기에는 力役·役 등으로도 불렸다. 전근대 국가의 노동력에 대한 지배는 토지에 대한 지배와 함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고려국가는 국초부터 군현을 단위로 호구를 조사하고 호적을 작성하였으며,¹⁾ 이를 바탕으로하여 전국의 노동력을 파악하였다. 국가는 이렇게 파악한 노동력을 전조·공물 등의 현물재정원과 함께 국가 재정운영구조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지배를 관철하였다. 요역은 노동력 징발이라는 점에서는 군역 등 다른 노동력 징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아무 댓가없이 국가에 제공하는 부세의 하나라는 점에서는 다른 현물·부세와 관련을 갖고 있었다. 또한 국가의 노동력에 대한 지배는 노동력 자체의 지배 뿐 아니라 현물 부세의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 사학과 부교수

- 1) 安秉佑, 〈高麗初期 財政運營體系의 成立〉《高麗史의 諸問題》1986.
 朴鍾進, 〈高麗前期 中央官廳의 財政構造와 그 運營〉《韓國史論》23, 1990.

필요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에 의해서,²⁾ 요역의 징발 대상과 그 기준, 요역의 종류와 형태, 요역의 면제자 등 고려시기 요역제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밝혀졌다. 그렇지만 아직 고려시기 부세의 하나인 요역이 수취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요역징발의 구체적인 모습에는 불분명한 것이 많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요역과 다른 부담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수취구조에서 요역이 차지하였던 위치를 정리하고, 요역징발의 구조를 군현 차원과 국가 차원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2. 요역과 다른 부담과의 관계

요역과 다른 부담과의 관계를 검토하기 전에 서술의 편의상 요역의 종류를 정리하겠다. 부세로서의 노동력 징발 즉 요역 징발은 국가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몇가지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요역은 그 주체나 징발 범위에 따라서 군현 차원의 요역과 국가

2) 고려시기 요역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白南雲, <제8편 封建的收取樣式의 諸形態> 《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1937.

今堀誠二, <高麗賦役考覈> 《社會經濟史學》9-3·4·5, 1939.

姜晉哲, <제6장 農民의 負擔> 《高麗土地制度史研究》, 1980.

李惠玉, <高麗時代 三稅制에 대한 一考察> 《梨大史苑》18·19합집, 1982.

<高麗時代 庸(役)制研究> 《梨花史學研究》15, 1984.

<高麗時代 稅制研究> 1985년,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李貞熙, <高麗時代 徭役의 運營과 그 實態> 《釜大史學》8, 1984.

<高麗後期 徭役 收取의 實態와 變化> 《釜大史學》9, 1985.

이에 대한 연구사 정리로는 다음의 글이 있다.

李炳熙, <高麗時期 經濟制度研究의 動向과 「국사」교과서의 敘述> 《歷史教育》44, 1988.

차원의 요역으로 나눌 수 있다. 군현 차원의 요역은 현물 부세의 조달과 운반에 관련된 貢役·輸役 등이 정기적이고 대표적인 것이었다.³⁾ 또 군현 차원의 역에는 군현 자체 내의 토목공사역, 토지개간이나 경작에 동원되는 역이 있었다. 그 밖에 佛事같은 수령이나 향리들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많았으며,⁴⁾ 이 경우 지방군조직 혹은 그것을 포함하는 향도 등의 조직이 이용되기도 하였다.⁵⁾ 국가에서는 이러한 역을 雜役이나 不愆之役으로 간주하여,⁶⁾ 지방관의 자의적인 요역징발을 견제하였다. 수령의 임무 중 賦役均은 이러한 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었다. 반면에 국가 차원 요역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축성, 사원영조, 궁궐영조, 수리시설 축조 등 국가적 규모의 토목공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공사에는 군인을 동원하기도 하였지만, 축성을 제외하고는 주로 공사 소재지 근처에 위치한 군현을 중심으로 하여 군현단위로 요역을 징발하였

3) 姜晉哲은 貢役을 요역과는 별개의 세항목인 공부 안에 포함되는 역이라 하여 요역과 공역을 구분하고 있지만 (강진철, 1980, 앞논문), 공역은 요역에 포함될 뿐 아니라 군현차원의 요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金敎名은 貢役을 常貢(貢物)과 徭役의 略稱보아서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지방관아에서 雜貢(貢物) 생산을 위하여 동원한 노동력을 공역이 아니라 常徭라고 파악하였지만 (<高麗時代의 常徭와 雜貢-賦稅의 기본 분류와 관련하여-> 《淸溪史學》 8, 1991), 상요를 고려 全時期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朴鍾進, <高麗時期 稅目的 用例檢討> 《國史館論叢》 21, 1991, 참고) 또 지방관아의 역을 雜役으로 파악하는 것도 요역 자체를 잡역으로 인식하였던 조선전기의 용례를 통하여 본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尹用出, <15·16세기의 요역제 개편> 《17·18세기 요역제의 變動과 募立制》 1991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참고)

4) 《고려사》 권85, 형법2, 禁令, 성종 원년 6월 「正匡 崔承老 上書曰 (생략) 世俗以種善爲名 各隨所願 營造佛宇 其數甚多 又有中外僧徒 競行營造 普勤州郡長吏 徼民 役使急於公役 民甚苦之 願嚴加禁斷 令遠而安南安東 近而御事都省 檢劾罪其長吏以除百姓勞役」.

<醴泉郡開心寺石塔記> (황수영 편, 《韓國金石遺文》) 및 <若木郡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이기백 편,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에 보이는 불탑의 조성과정의 대표적인 예이다.

5) <예천군개심사석탑조성기> 및 <약목군정두사오층석탑조성성지기> 참고.

6) 《고려사》 권84, 형법1, 職制, 숙종 16년 기록; 같은 책, 권79, 식화2, 農桑, 인종 6년 3월 및 충렬왕 24년 충선왕 즉위 하고 등 참고.

다. 왕이나 사신의 행차를 迎送하고 支持하는 일 또한 국가 차원의 요역 중 중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지역의 군현과 개경과 서경을 잇는 길 주변의 군현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은 요역에 시달렸다. 이에 따라 요역의 감면도 자주 시행되었다.⁷⁾ 위와 같이 요역은 그 운영과 관련하여 군현 차원의 역과 국가 차원의 역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들 모두는 군현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졌다. 군현민의 역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군현 차원의 역이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현물 부세의 조달·운반과 관련된 공역과 수역이었다.

또 요역은 그 세부적인 형태에 따라서 축성, 사원영조, 궁궐영조, 수리 시설축조 등 토목공사역(工役), 현물 부세의 조달과 운반에 관련된 貢役·輸役 등으로 나눌 수 있다.⁸⁾ 위의 여러 역들은 그 빈도수에 따라서 정기적인 것과 비정기적인 것으로 나눌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역들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민들이 분담하였다.⁹⁾

-
- 7) 《고려사》 권78, 식화1, 貢賦, 睿宗 3年 2月 「判 京畿州縣 常貢外 徭役煩重 百姓苦之 日漸逃流 主管所司下問界首官 其貢役多少酌定施行 銅·鐵·瓷器·紙·墨雜所 別貢物色徵求過極 匠人艱苦以逃避 仰所司以其各所別常貢物多少酌定 奏裁」; 같은 책, 권118, 趙浚傳 「京畿八縣 徭役甚煩 然非正官之所統 觀察之所理 又無守令之宜化 故科斂不均 賦役無藝」; 같은 책, 권80, 식화3, 恩免之制 참고.
- 8) 고려시기 요역의 징발 실태에 대하여는 그 징발 구조와 관련하여 이 글 3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 9) 고려시기 요역의 징발 기준에 대하여는 《고려사》 형법1, 戶婚條에 人丁의 多寡에 따른 9等戶制에 의해 賦役을 정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고려시기의 요역징발이 이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기의 9등호제는 고려초의 잠정적인 제도로 이해하기도 하고(金基興, 〈'新羅村落文書'의 分析〉 《三國 및 統一新羅 稅制의 研究》 1991), 人丁의 多寡에 따른 구분을 강조하여 고대적인 제도로 이해하기도 한다(강진철, 1980년 앞논문). 고려시기에 9등호제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한 고려시기의 9등호제를 잠정적인 제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고려전기 役을 포함한 3세의 징수가 토지징작을 전제로 하여 징수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朴鍾進, 〈高麗前期 賦稅의 收取 構造〉 《蔚山史學》 창간호, 1987), 인정의 다과에 따른 역의 징발을 고대적인 제도로 인식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역의 징발이 인정의 다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1) 現物 부담과의 관계

요역은 군현단위로 할당된 현물 부세의 대부분을 조달하고 운반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현물 부세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한편, 노동력 자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군역 등의 여러 역과 관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다른 부담과 요역과의 관계를 바로 파악하는 것은 요역이 당시 국가운영에서 차지하였던 위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먼저 당시 국가재정운영속에서의 요역의 위치를 현물 부담과의 관계를 통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요역은 당시 일반 민이 국가에 부담하였던 3세의 하나였으므로, 우선 3세 상호간의 관계 즉 역과 租·布와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고려시기 민호가 부담하였던 기본 세목인 조·포·역 상호관계에 대하여는 다음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 ① 성종 7년 12월 判에 “水·旱·蟲·霜으로 재난을 입어 田이 4분이상 손상되었으면 조를 면제하고, 6분이상이면 조·포를 면제하고, 7분이상이면 조·포·역을 모두 면제한다”고 하였다. (《고려사》 권80, 식화3, 진휼, 재면지제)¹⁰⁾

이 기록은 고려전기 조·포·역의 감면규정인데, 주목되는 것은 조·포·역의 감면이 그 해의 田損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민호에 대한 3세의 부과가 민호의 토지경작을 전제로 한다는 것과 동시에 3세 징수가 서로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10) 成宗 7年 12月 「判 水旱蟲霜爲災 田損四分以上免租 六分免租布 七分租布役具免」。 또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같은 책, 권78, 식화1, 답협손실, 文宗 4年 11月 「判 田一結 率十分爲定 損至四分除租 六分除租布 七分租布役具免」; 같은 책, 권80, 식화3, 진휼, 재면지제, 肅宗 7年 3月 「三司奏 東京管內州·郡·鄉·部谷十九所 因去年久旱民多飢困 乞依令文 損四分以上免租 六分以上免租調 七分以上課役具免 已輸者請折減來年租稅 制可」

알려준다.¹¹⁾ 3세부과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다음 기록들을 통하여 3세 상호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 ① 현종 21년 6월 羅城을 축조하고 重光寺를 영조하는데 역을 진 사람은 그 해의 調布를 감해주었다. (《고려사》 권80, 식화3, 진휼, 은면지제)¹²⁾
- ② 인종 14년 5월 詔하여 諸州縣兵으로서 城을 쌓은 사람과 水軍으로서 軍량을 옮긴 사람에게는 그 해 전조의 반을 면제하였다. (위와 같음)¹³⁾

①은 당시 나성을 축조하고 중광사를 영조하는데 동원되어 役을 진 사람에게 그 해의 조포를 감면해 준 기록이다. 당시 나성 축조와 중광사의 영조는 대규모의 토목공사였는데, 국가에서는 이를 위하여 규정 이상의 과도한 요역징발을 하게되었고,¹⁴⁾ 이 때문에 규정 이상의 요역을 져던 경성민들에게 조포를 감면해 준 것이다. 이것은 왕이나 사신의 행차가 머물거나 지나간 군현의 부세가 감면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¹⁵⁾ 규정이상의 역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恩免이라는 명목으로 보상한 것이다. ②는 묘청의 난을 평정한 후 내린 詔이다. 묘청의 난과 관련하여 성을 쌓고 군량을 운반하였던 諸州縣兵과 水軍에게 그 해 전조의 반을 감해주었던 것도 이들이 묘청의 난과 관련하여 규정 이상의 역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또 예종 3년 2월 王太后를 봉하고 여러 주·군·현에서 方物을 進奉한 長吏와 從卒에게 田丁稅布를 감면한 기록이 있다.¹⁶⁾ 이 기록에서 田丁의 실체는

11) 朴鍾進, 1987, 앞논문.

12) 顯宗 21年 6月 「築羅城 營重光寺 赴役者 減今年調布 諸州郡縣逋欠 限戊辰年蠲免」 그런데 《고려사절요》 권3의 같은 년월의 기록에는 「敕 減京城赴役者今年調布(생략)」으로 되어있어 당시 역의 동원이 경성에서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있다.

13) 仁宗 14年 5월 「詔 諸州縣兵築城者 水軍輸軍餉者 賜今年田租之半」

14) 이와 관련하여 국가에서는 현종 20년 6월 有妻僧을 징발하여 중광사역도에 충당하기도 하였다. (《고려사절요》 권3, 현종 20년 6월 「徵有妻僧 充重光寺役徒」

15) 이때 면제되는 세목은 주로 조·전조·조세 등으로 나타난다. 《고려사》 권80, 식화3, 진휼, 은면지제 참고.

분명하지 않지만, 방물(일종의 進上)을 운반한 長吏와 從卒에게 세포를 감면하여 준 것은 분명하다. 이 기록은 恩免의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역을 진 사람에게 현물 부세인 세포를 감면하여 주었다는 측면에서 위에서 인용한 내용과 일치한다. 물론 고려시기에는 요역 징발기간의 한도나 한도를 초과하였을 때의 규정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위에 인용한 내용을 통하여 그러한 규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고려의 부세제도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중국 당나라의 3세 운영규정을 통하여 유추하여 보면,¹⁷⁾ 고려시기에도 민으로부터 역을 초과 징발하였을 경우 戶의 차원에서라도 조·포 등을 감면하는 규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려시기의 부세징수는 군현단위로 이루어졌으며, 군현 단위의 부세인 田賦(전조)·土貢(공물)·進上·요역 등은 군현의 민들이 부담한 3세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¹⁸⁾ 따라서 군현의 민호들이 부담하였던 역은 노동력 자체로서도 군현단위로 징발되어 국가 차원의 각종 役事에 동원되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외한 군현의 민호들이 부담하였던 역의 대부분은 군현 차원의 것이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군현 차원의 요역은 현물 부세의 조달과 운반에 관련된 貢役·輸役 등이 정기적이며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 중 공물조달과 관련된 공역의 존재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록이 주목된다.

- ① 명종 18(1188)년 3월 제물 내리기를, “여러 州·府·郡·縣의 백성은 각각 貢役이 있다. 요즈음 守土員僚들이 使命을 부정하게 시켜서(斜屬使命) 役價를 징취하고 그 공부를 매년 면제하여 주고 있으며, 椽吏之徒도 이 식을 따르니 역이 균등하지 못하게 되었고, 貢戶之民은 이 때문에 도망하고 있

16) 《고려사》 권80, 식화3, 진홀, 恩免之制, 睿宗 3년 2월 「以封王太后 諸州郡縣 進奉長吏·從卒等 各田丁稅布全放」

17) 중국 당나라의 경우에도, 역 징발의 규정일수는 20일 이었지만, 그 초과일수에 따라서 租·調 등이 차례로 면제되었다. (堀敏一, 〈均田制와 租庸調制의 展開〉《世界歷史》5, 1970)

18) 박종진, 1987, 앞논문.

다. 각 도의 使者는 巡行按問하여 이같은 관리는 죄로서 아뢰고 그 나머지 榷吏들은 형에 따라 黜職하여 貢役을 균등하게 하라”고 하였다. (《고려사》 권78, 식화1, 田制, 貢賦)¹⁹⁾

- ② 내가 孟城의 수령으로 나갔을 때 도독부의 명령을 받들어 御墨 五千挺을 만들어 봄에 먼저 납부해야 했으므로 역마를 타고 孔巖村에 가서 백성을 부려 松煙 百斛을 채취하게 하고 良工을 모아 직접 역을 독려하여 두 달만에 끝냈다. (《파한집》 권 상)²⁰⁾

①에 보이는 수령들이 役價를 받고 면제하여 주었던 공역은 공부(공물)를 조달하는 역이 분명하며, 이러한 의미의 공역은 예종 때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²¹⁾ ②는 李仁老가 孟城의 수령으로 있을 때 공암촌에 가서 어묵 오천 정을 만들어 납부하였던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먹의 생산을 위하여 소나무 그을음 채취를 비롯한 각종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것은 당연한데, 이 때의 노동력은 바로 공암촌과 그 주변 민호들의 요역의 일환인 공역이었다.²²⁾ 당시 군현 단위로 부과된 공물의 품목은 다양하였으며,²³⁾ 그것의 조달을 위한 공역의 형태 역시 다양하였을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공역의 운영, 더 나아가서 군현 차원의 역 운영에는 일정한 분업이 이루어졌

19) 明宗 18年 3月 「下制 諸州府郡縣百姓各有貢役 爾來守土員僚 使屬使令 徵取役價 其貢賦經年除免 榷吏之徒 并違此式 役之不均 貢戶之民 因此逃流 各道使者 巡行按問 如此官以罪奏聞 其外榷吏 依刑黜職 令均貢役」

20) 「及僕出守孟城 承都督府符 造供御墨五千挺 春月首納之 乘遽到孔巖村 驅民採松煙百斛 聚良工躬自督役 彌兩月云畢(생략)」

21) 《고려사》 권78, 식화1, 공부, 睿宗 3年 2月 「判 京畿州縣 常貢外徭役煩重 百姓苦之日漸逃流 主管所司下問界首官 其貢役多少酌定施行 銅·鐵·瓷器·紙·墨雜所 別貢物色徵求過極 匠人艱苦以逃避 仰所司以其各所別常貢物多少酌定 奏裁」

22) 지금까지 공암촌에 대하여는 墨所로 보는 견해와 御墨이라는 공물을 생산하는 地域村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구산우, <고려시기 부곡제의 연구성과와 과제> 《釜大史學》 12, 1988 참고) 필자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공암촌을 墨所로 본다 하더라도, 소를 군현 공물의 일부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곳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공암촌의 御墨생산과 관련된 역을 공암촌과 그 주변 민호 등의 貢役으로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을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없지만 각 물품의 특성에 따른 물품 조달에 적합한 환경이나 조달 시기, 전문화 등과 관련하여 촌락별·연령별 분업 등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전조와 공물 등 현물 부세의 운반에도 민의 요역이 동원되었다. 몇몇 기록에 보이는 輸役, 徵輸 등이 그것이다.²⁴⁾ 전조의 경우는 주로 국가 차원의 漕運을 통하여 중앙으로 운반되었지만, 각 군현의 전조를 조창까지 운반하는 일이나 조운 후 중앙의 각종 창고로 운반하는 일은 모두 일반 민의 요역징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조운의 댓가로 輸京價가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조 운반의 의무가 전적으로 농민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⁵⁾ 한편 공물 등은 수시로 다양한 물품을 중앙으로 운반하였을 뿐 아니라, 또 전조와 같이 물량이 대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대체로 육지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다. 이 경우에도 그 운반의 의무는 그 군현의 농민들에게 지워졌다. 즉 향리들이 농민들을 집꾼으로 징발하여 공물을 중앙으로 운반하였다. 이러한 점은 예종 3년 2월 “方物을 바친 長吏와 從卒”²⁶⁾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종졸은 輸役의 형태로서 집꾼으로 징발되어 長吏를 따라온 농민이라고 생각한다.

군현단위로 부과된 현물 부세의 조달과 운반에는 민의 요역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이에 국가에서는 원활한 현물 부세의 조달을 위해서 지나치

23) 현재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고려시기의 공물 품목으로는 平布·小平布·中布·紵布·絲綿·綿紬·黃馬布·細麻布·大絹·中絹·小絹·大綾·大文羅·綾羅 등의 직물류, 황금·은·백적동·철·소금·柴炭 등의 광물, 새우·조개·魚脯 등의 해산물과 그 밖의 쇠가죽·쇠근육·쇠뿔, 말, 인삼, 유밀, 홍지초, 漆木, 밤, 잣, 生麻, 白麻, 술방울 등이 있다.

24) 《고려사》 卷80, 食貨3, 賑恤, 恩免之制, 毅宗 21年 9月 「王自南京還 還南京·廣州今年租稅·輸役 其餘州縣半之」; 같은 책, 毅宗 23年 4月 「還自西京 下詔曰 所歷州府郡縣貢稅·輸役 許令全放 公私惠利 亦皆減除」; 같은 책, 明宗 27年 11月 「神宗即位詔曰 貢賦·徵輸·公私惠利 不便於民者 并放」

25) 《고려사》 권79, 식화2, 漕運, 成宗 11년 「定漕船輸京價(생략)」

26) 같은 책, 권80, 식화3, 진홀, 恩免之制, 睿宗 3년 2월 「以封王太后 諸州郡縣 進奉長吏·從卒等 各田丁稅布全放」

거나 급하지 않은 요역을 금지하였다.

2) 군역과의 관계

한편 국가의 노동력 지배라는 측면에서 요역과 함께 큰 의미를 가졌던 것은 군역이었다.²⁷⁾ 고려시기 군역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²⁸⁾ 최근의 군제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京軍의 일부 만이 직역으로서의 군역을 가진 직업 군인이었으며, 경군의 대부분과 州縣軍·州鎮軍은 기본적으로 농민에서 징발된 番上軍이었다. 따라서 요역과 군역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고려시기 노동력 동원체제를 밝히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요역과 군역이 국가의 노동력 지배라는 차원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통하여 요역이 국가의 노동력 지배에서 차지하였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시기 요역과 군역의 대상이 기본적으로 같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27) 국가의 노동력지배로는 요역과 군역 외에도 향리역, 기인역 등 직역도 있지만 그것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댓가를 제도적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일단 구분된다.

28) 지금까지 고려시기 병제에 대하여는 京軍의 성격을 중심으로하여 대체로 李基白의 '軍班氏族說' (《高麗兵制史研究》, 1968)과 姜晉哲의 '府兵制說' (《高麗初期의 軍人田》) 《淑明女子大學論文集》 3, 1963)로 논의되어 왔는데, 이 두 학설은 경군의 성격을 一元的으로 보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이 두설을 절충하여 고려의 군인층을 二元的으로 보는 견해가 대두되어 주목되는데, 여기에는 고려의 京軍이 軍반씨족 등의 특정군인층과 州현군의 番上侍衛兵으로 구성되었다는 견해(張東翼, 《高麗前期의 選軍》) 《高麗史의 諸問題》, 1986), 고려의 군인이 軍반씨족(2軍)과 부병(6衛)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견해(洪元基, 《高麗二軍·六衛制의 性格》) 《韓國史研究》 68, 1990), 私田所有軍人과 公田所有軍人으로 구성되었다는 견해(馬宗樂, 《高麗時代의 軍人과 軍人田》) 《白山學報》 36, 1989), 上級軍人層과 下級軍人層으로 구성되었다는 견해(吳英善, 《高麗前期軍人層의 二元的 구성에 관한 연구》 1991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이들 견해는 고려시기 병제에 대한 연구의 이론 배경이나 구체적인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당시의 군인층이 2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다.

기록으로는 다음이 있다.

- ① 나라의 제도에 민이 나이 열여섯이 되면 丁을 삼아 비로소 國役に 복무케 하고 예순이 되면 역을 면해 준다. 州郡은 해마다 호구를 헤아려 籍을 만들어 戶部에 바치면, 모든 병사를 징발하고 役을 調發하는 일은 호적으로서 뽑아 정하였다. (《고려사》 권79, 식화2, 호구 서)²⁹⁾

위의 기록에 의하면 16세에서 60세까지의 사람을 丁으로 삼아 국역에 복무케 하며,³⁰⁾ 주군단위로 작성된 호적을 바탕으로 하여 병사를 징발하고 역을 조발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결국 고려시기 국역의 대표적인 것은 군역과 요역이었으며, 그것은 16세에서 60세까지의 정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말해준다.³¹⁾ 비록 군역과 요역이 모두 국가가 민호를 대상으로 하여 징발한 노동력이지만, 그것의 성격이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군역과 요역의 징발을 호적을 바탕으로 무작위로 할 수는 없었다. 농민 중 군역을 지는 계층과 요역을 지는 계층이 어떻게 나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록은 없지만, 대체로 그것의 구분이 역의 부담능력과 관련이 있었을 것 만은 분명하다.³²⁾ 그런데 고려시기에는 군인들이 토목공사를 비롯한 각종 국가적 역

29) 《고려사》 卷 79, 食貨 2, 戶口, 「國制 民年十六爲丁 始服國役 六十爲老而免役 州郡每歲 計口籍民 貢于戶部 凡徵兵調役 以戶籍抄定」

30) 여기서의 丁은 일정 연령층의 人丁을 의미한다.

31) 호적에 등록되어 있는 16세에서 60세까지의 丁은 모두 역을 져야했지만, 관직에 있는 사람을 비롯하여 직역을 가진 상층군인·鄉吏·其人 등은 국가에 일정한 역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역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요역 담당층은 국역의 담당층 중에서 군인으로 변상되어 나가 군역을 지는 층을 제외한 사람들이었다. 이 중 篤疾·孝子·順孫·義夫·節婦·侍丁 등은 구품의 차원에서 역이 면제되었고, 노비·楊水尺 등의 천역층과 승려도 원칙적으로는 국역에서 면제되었다. (李貞熙, 1984년 앞논문) 따라서 호적에 등록된 丁 중 위에서 열거한 면역층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요역을 져다. 한편 工匠 수달 피호(獮戶; 같은 책, 권105, 趙仁規傳)·鷹坊戶 등은 특정한 형태의 역을 국가기관에 부담하였다. 이 경우 군현을 매개로 한 요역은 면제되었지만, 이것은 요역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형태가 다른 요역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역에 동원되고 있었다. 다음의 기록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 ① 정종 11년 5월 榜을 게시하여 이르기를 “국가의 제도는 近仗 및 諸衛에는 額마다 護軍 1, 中郎將 2, 郎將 5, 別將 5, 散員 5, 伍尉 20, 隊正 40, 正軍訪丁人 1천, 望軍丁人 6백이 있는데, 무릇 扈駕와 안팎의 力役을 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근래에 化란을 겪어서 丁인이 많이 비어서 정인이 하였던 賤役을 祿官인 60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역을 감독 하는 것이 힘들게 되어 서로 다투어 피하기를 구하였으며, 오위와 대정들은 그 일을 당하지 못한다. (따라서) 만일 국가의 역역이 있으면, 秋役軍·品從·五部坊里的 호를 쇠출하게 되어 소요를 일으키게 된다(생략)”고 하였다. (《고려사》 권81, 병지1, 병제)³³⁾
- ② 의종 24년 6월 庚戌 朔 延福亭 南川の 堤防이 무너지니, 다시 막으라고 명했

32) 고려 초기에는 국가의 노동력 확보정책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구분을 시도하여, 丁戶層을 중심으로 하는 직역체계를 수립하고, 반면 그에 경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白丁層을 중심으로 요역호를 편성하려고 하였다. (金琪瓊, <高麗前期 農民의 土地所有와 田柴科의 性格> 《韓國史論》 17, 1987) 그리하여 군인호, 향리호, 기인호 등 국가의 직역을 담당할 호는 비교적 경제력이 있는 정호층으로 확보하려고 하였지만, 군인의 경우 규정된 군액을 정호층으로 채우기는 처음부터 불가능 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전기의 군인은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군인은 농민변상군으로 구성될 수 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군인이 농민변상군으로 구성되었다 하여도, 그들을 징발할 때에는 토지소유 등의 경제기반을 고려하여 保勝·精勇·一品 등의 役種이나 부역기간을 구분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權榮國, <武臣執權期 地方軍制의 變化> 《國史館論叢》 31, 1992). 고려초기부터 군인들이 전쟁과 노역에 시달리면서 천역시되자, 피역이 증가하여 군액이 모자라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군인의 선발대상이 백정층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초기에 의도하였던 구분은 의미가 없어져 갔다.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군인의 일정수에 한하여 選軍時 토지지급이나 養戶·助役 배정 등 경제적인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그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군역과 요역은 다같이 국역의 범주로 고정되어 갔다.

33) 靖宗 11年 5월 「揭榜云 國家之制 近仗及諸衛 每額設護軍一·中郎將二·郎將五·別將五·散員五·伍尉二十·隊正四十·正軍訪丁人一千·望軍丁人六百 凡扈駕內外力役 無不爲之 比經禍亂 丁人多闕 丁人所爲賤役 使祿官六十代之 因此領役艱苦 爭相求避 伍尉·隊正等未能當之 若有國家力役 乃以秋役軍·品從·五部坊里 各戶刷出 以致騷擾」

다. 戊午 詔에 이르기를 “군졸의 힘이 다하여서 제방을 막을 수 없으니, 마땅히 坊里에서 丁을 징발하여 제방을 쌓으라”고 하였다. (같은 책, 권19)³⁴⁾

위의 기록들에 의하면 국가적인 토목공사에 군인이 우선적으로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①에 의하면 경군의 每領에 소속된 正軍訪丁人 1천명과 望軍丁人 6백명이 왕의 행차 호위를 비롯한 나라 안팎의 역역을 담당하였으며, 그것을 천역이라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 변란으로 丁인이 많이 비자 오위와 대정 등 각 領에 소속된 하급 장교들이 그 일을 담당하였지만, 그것은 한계가 분명하였고 이에 추역군·품종·5부방리의 호를 징발하여 국가의 역역을 담당하게 하여 소요가 일어났다고 한다. 이것은 국가차원의 각종 노역에 군인이 우선 징발되었음을 보여준다. ②에 보듯이 군졸의 힘이 다하여서 제방을 쌓지 못하게 되자 坊里에서 丁을 징발한 것도 국가적 토목공사에 군인이 먼저 동원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또 앞에 인용한 인종 14년 5월의 기록도 군인층이 역에 동원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³⁵⁾ 군인은 일반 요역군에 비하여 더 조직된 노동력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토목공사에 동원하기가 용이하였고 또 통제하기도 쉬웠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토목공사에 군인이 동원되는 것은 군인 본연의 임무인 군사적인 일은 아니었지만 군사적인 비상사태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고려의 군인은 국가적 토목공사를 비롯한 많은 역역에 동원되었다.³⁶⁾ 이 때 군인이 제공한 노동력은 군인으로서 하는 역으로서 그것은 군인으로 변상하지 않은 일반 농민의 요역과는 다른 차원의 역, 곧 軍役이었다. 한편 이러한 군인들이 제공한 노동력은 군인 본래의 임무인 군사적인 것 외에 추가로 부가되었던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34) 毅宗 24년 6월 庚戌朔 「延福亭南川堤決 命復塞之 戊午詔曰 軍卒力竭 不能堤防 宜發丁坊里 築之 開水門四五所 創亭堤上(생략)」

35) 주13) 참고.

36) 위에 인용한 사례 외에도 고려시기에는 군인이 각종 노역에 동원되었던 예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李基白의 <高麗 軍役考> (<高麗兵制史研究> 1968)을 참고할 것.

본연의 군사적인 임무가 소홀히되거나,³⁷⁾ 그들의 경제적 기반인 농사를 망치는 일이 많았다.³⁸⁾ 따라서 군인들의 과도한 노동력 징발은 경계되는 일이었다. 결국 요역과 군역은 농민층을 기본으로 한 국가의 노동력지배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비록 군인 본연의 임무는 아니었지만 국가적 차원의 대역사에 군인이 동원되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3. 요역징발의 구조

1) 군현 차원 요역의 징발구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군현차원의 요역 중 가장 중요하고 또 정기적이었던 것은 군현 단위로 부과된 현물 부세의 조달과 운반이었다. 또한 지방차원으로 추진된 토목공사와 각종 사신의 영송과 접대 역시 중요한 요역징발의 대상이었다. 군현차원의 토목공사는 불탑 조성 등의 불사, 지방관아와 그 부속건물의 영조, 축성, 수리시설의 축조,³⁹⁾ 토지의 개간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현물 부세의 조달 운반에 대한 역은 정기

37) 군인이 각종 역사에 동원되는 것은 일반 역부의 동원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농한기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군인은 농한기에 군사적 조련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점에서(《고려사》 권81, 병1, 병제, 문종 27년 3월 「都兵馬使准舊制請 以九月 遣使訓練中外軍士 從之」; 같은 책, 권95, 王寵之傳 「文宗初(생략) 未機 以吏部尙書 爲都兵馬使 奏(생략) 而況諸衛軍士 國之爪牙 宜於農隙 教以金鼓旌旗坐作之節(생략)」), 군인을 자주 役事에 동원하는 것은 군인의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

38) 국가로부터 수조권분급 등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받은 군인은 상급군인층에 국한되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군인은 농민반상군이었다. 역에 동원된 군인의 전조를 감해주는 것은 그들이 국가에 전조를 부담하는 농민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고려사》 권80, 식화3, 진휼, 온면지제, 인종 14년 5월 기록참고.)

39) 고려시기 수리시설 축조의 사례는 다음 글을 참고할 것. 이평래, <고려후기 수리시설의 확충과 수전개발> 《역사와 현실》 5, 1991.

적인 것이었고, 군현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토목공사와 사신의 영송 접대는 부정기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각종 요역은 군현이 주도하여 군현민의 노동력을 징발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역의 형태나 성격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현물 부세의 조달 운반에 대한 구체적인 징발사례는 많지 않으며, 토목공사의 사례 역시 연대기에서 구체적인 것을 찾기는 어렵다. 군현 차원의 요역징발 구조를 대표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군현에서 役夫를 징발하고 부리는 일은 수령의 책임 아래 향리층의 주도로 이루어 졌다. 현물 부세를 조달하고 운반하는 공역·수역 등이 수령과 향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은 당시의 수취 운영과 관련하여 보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으며,⁴⁰⁾ 이런 점은 군현 차원의 토목공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⁴¹⁾ 고려후기의 용례이지만 李穀이 쓴 〈金海府鄕校水軒記〉와 〈韓州重營客舍記〉, 李穡이 쓴 〈風詠亭記〉에 의하면 각 고을에서 토목공사를 할 때 수령의 책임아래 향리들이 실무를 담당하였다.⁴²⁾ 고려의 주현군과 그 중에서도 노동부대로 일컬어지는 一品軍의 장교가 향리로 임명되었던 사실도 이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³⁾ 현종 때의 기록인 〈淨兜寺五

40) 《고려사》 권78, 식화1, 전제, 공부, 예종 3년 2월의 기록과 명종 18년 3월의 기록 참고.

41) 고려말의 기록이지만 조준상서의 다음 내용이 참고된다. 《고려사》 권118, 趙浚傳, 禍王 14년 8월 「上疏(생략) 近來此法一毀 守令不知其州之戶口 按廉不知一道之戶口 當徵兵調役之際 而鄕吏欺蔽 招納賄賂 富壯免而貧弱行 貧弱之戶不勤其苦而逃矣 卽富壯之戶代受其苦 亦貧弱而逃矣 其任徵發者 憤鄕吏之欺蔽 痛加酷刑 割耳劓鼻 無所不至 鄕吏亦不勤其苦而逃矣 鄕吏百姓流亡四散 州郡空虛者 戶口不籍之流禍也 願今當量田審其所耕之田 以田多寡 籍其戶爲上中下 又戶分良賤 守令貢于按廉 按廉貢于版圖 朝廷凡徵兵調役 有所憑依 及時發遣 而守令按廉 如有違者 輒繩以理」

42) 《東文選》 권70, 〈金海府鄕校水軒記〉 「李君詢其故 卽屬州吏 乃役農隙 豐其材壯其地 擴而新之」; 같은 책, 권71, 〈韓州重營客舍記〉 「君乃量吏才 其能者卽界之大屋而多其夫 拙者少之 旣分幹之」; 같은 책, 권72, 〈風詠亭記〉 「部分群吏身自督役 不煩一民 衆工效力 其修公館 而及亭射 此其二也」

43) 《고려사》 권81, 병1, 병제, 문종 23년 3월 「判 諸州一品 別將卽以副戶長以上校尉卽以兵倉正·戶正·食祿正·公須正 隊正卽以副兵倉正·副戶正·諸壇正 試選弓科而差充」

曆石塔形止記)에 나오는 若木郡의 戶長 柳瓊이 別將職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가 副戶長인 承律과 함께 석탑의 재료 운반을 지휘하였던 사실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⁴⁴⁾ 또 명종 12년 3월 국가에서 精勇軍과 保勝軍을全州에 파견하여 官船을 만들 때 上戶長 李澤民이 全州司錄 陳大有와 함께 役을 감독하였던 것도 같은 예이다.⁴⁵⁾ 이처럼 군현에서 필요한 역부를 징발하고 부리는 일은 수령과 향리의 주도아래 이루어졌지만, 촌락에서의 실무는 村典(里正)의 도움을 받았다. 촌전은 촌락에 부세 감면의 사유가 생겼을 때 그것을 수령에게 보고하였고,⁴⁶⁾ 또한 촌락에서의 노동력 징발 등에도 관여하였다. 이에 따라 里正(촌전)이 課役 대상을 누락시켰을 때에는 매우 엄한 벌을 감수하여야 하였다.⁴⁷⁾ 그런데 공양왕 때 長興府使로 부임한 皇甫公이 왜구에 대비하여 축성한 기록인 이색의 <中寧山皇甫城記>에는 節度使 金用貂가 파견한 典農副正·中郎將·郎將 외에 장흥부 사람으로서 前承奉郎·郎將·散員·檢護軍·令同正 등의 품관층이 戶長·文記官 등의 향리층과 함께 역을 감독한 사람으로서 거론되고 있어 고려말기의 지방사회의 주도세력의 변화 모습을 볼 수 있다.⁴⁸⁾

다음으로는 현물 부세의 조달역과 토목공사역의 차이를 염두에 두면서 군현 차원 요역 징발의 실태를 살펴보겠다. 즉 공역 및 수역 등과 토목공사역은 부역실태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요역징발 시기와 기간을 살펴보아도 공역이나 수역 등은 군현에 부과된 각종 물품의 다양한

44) <정두사오층석탑조성형지기> 「太平7년 歲次丁卯十二月日 修院僧俗等一千餘人 乙 戶長柳瓊左徒 副戶長承律右徒 例以分折爲弥 日日以石運已畢爲」

45) <고려사> 권20, 명종 12년 3월 「初全州司錄陳大有頗負清介 用刑極酷 民多苦之 及國家遣精勇·保勝軍 造官船 大有與上戶長李澤民等 督役甚苛 旗頭竹同等六人 作亂 嘯聚官奴及群不逞者(생략)」

46) 같은 책, 권78, 식화1, 踏驗損實, 문종 4년 11월 「判 凡州縣水旱蟲霜禾穀不實 田疇 村典告守令 守令親驗申戶部 戶部送三司 三司移牒檢覈虛實後 又令其界按 察使差別員審檢 果災傷 租稅蠲減」

47) 같은 책, 권84, 형법1, 戶婚, 「里正不覺漏脫增減出入課役 一口笞四十 四口五十 七口杖六十 十口七十 十三口八十 十六口九十 二十口一百 三十口徒一年 四十口一年半 五十口二年 六十口二年半 若知情同家長法科之」

48) 李穡, <中寧山皇甫城記> <동문선> 권76.

종류와 납부시기 때문에 거의 일년 내내 역에 동원되었으므로, 이들 역은 거의 정기적이었다. 따라서 군현의 현물 부세와 관련된 역의 운영에는 일정한 분업이 이루어 졌을 것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각 물품의 특성에 따른 물품조달에 적합한 환경이나 조달 시기, 전문화 등에 따른 촌락별 연령별 분업 등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고려시기 군현에 부과된 각종 공물의 생산이 모두 所에서 생산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소의 존재는 군현내 역의 분업이라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군현 차원의 토목공사는 대체로 부정기적이었고 수령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料外의 역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군현 토목공사의 대부분은 농한기에 시작하여 농한기에 마무리하는 비교적 단기간의 공사였다.⁴⁹⁾ 그렇지만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수령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과도한 요역의 징발은 농사를 망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러한 역을 不急之役이라 하여 농사철을 중심으로 금지하였다.

군현 차원의 요역 징발은 호적을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하였다. 이 점은 현물 부세의 조달과 운반에 대한 역은 말할 것도 없지만, 부정기적으로 동원되었던 토목공사의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곡의 <韓州重營客舍記>에는 한주의 객사를 증명할 때의 역부징발에 대하여 “호적에서 역부를 뽑되 노인과 어린이만 면하였다”고 하였고,⁵⁰⁾ <寧州懷古亭記>에는 “모든 읍의 사람 가운데 호강을 묻지 않고 호역을 균등히 하였다”고 하여⁵¹⁾ 고려후기 군현 차원의 토목공사가 추진될 때에도 호적을 기

49) 군현의 토목공사가 모두 단 기간의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1349(충정 원)년 寧州의 守令 成元探가 지방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懷古亭을 만들면서 그 해의 농한기에 일을 마치려고 하였던 것(李穀, <寧州懷古亭記>《동문선》 권 71)과 농사철에 不急之役의 효과가 강조되었던 사실은 군현 차원의 토목공사는 공역 수역 등 부세조달과 관련된 역과는 달리 농한기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듯하다. 물론 중앙 차원의 토목공사 역시 농사철에는 파역하는 것이 상례였지만, 일의 성격에 따라서 그러한 원칙이 무시되는 일이 많았다. (이글의 국가 차원의 요역징발구조 참고)

50) <韓州重營客舍記> 「於是 籍戶出夫 唯免老稚 航海取材」

51) <寧州懷古亭記> 「於是 舉一邑之人 無問彙強 戶役而均程之」

준으로 하여 일정한 나이층에 한하여 균등히 역부를 징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요역징발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군현 차원의 과도한 토목공사를 不急之役이라 하여 금지시켰을 뿐 아니라, 군현에서의 부역의 균등은 현물 부세의 균등과 함께 국가안정의 기본으로서 수령 考課에 크게 반영시켰기 때문이었다.

군현 차원의 요역 중에는 토지개간이나 경작에 동원되는 역도 적지 않았다. 이는 養戶나 助役に 배정되어 균역을 지는 사람의 농사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지만⁵²⁾ 그보다는 수령의 주도아래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토지개간에 집단적으로 동원되었으며,⁵³⁾ 심지어는 지방관 개인의 토지에 불법적으로 동원되어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⁵⁴⁾

한편 군현 차원의 전형적인 역사는 아니지만, 군현에서 이루어진 토목공사의 구체적인 것을 보여 주는 기록으로서 醴泉의 <開心寺石塔記>와 若木郡의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가 있다.⁵⁵⁾ 현종 2년(1011)에 이루어진 <개심사석탑기>에 의하면 예천군과 多仁縣의 僧俗娘 萬餘名이 개심사석탑의 조성을 위하여 香徒의 형태로서 동원되었으며, 여기에는 光軍 46

52) 《고려사》 권79, 식화2, 農桑, 예종 3년 2월 「制 近來州縣官 祇以官院朝家田 令人耕種 其軍人田 雖膏腴之壤 不用心勸稼 亦不令養戶輸糧 因此軍人飢寒逃散 自今先以軍人田 各定佃戶勸稼 輸糧之事 所可委曲奏裁」; 같은 책, 권84, 형법 1, 戶婚, 공민왕 20년 12월 「教曰 單丁從役 自丙申年已在禁限 官吏役使如初 尤可憐憫 須給助役 毋令失業 年滿六十免役」

53) <張文緯墓誌> 「知水州時 州民飢荒 公省力役 使民服公 田不闕者 斬菱苑播 厥穀連歲大穰」; 《고려사》 권104, 金方慶傳, 「高宗時 後爲西北面兵馬判官 蒙兵來攻 諸城入保婆島 島有十餘里 平衍可耕 患海潮不得墾 方慶令築堰 播種 民始苦之 及秋大熟 人賴以活」

54) 《고려사》 권107, 權昞傳 「(충렬 權昞) 嘗按三道 (생략) 甫州副使張俊 家在丹山與州近 遣州人耕耨其田 昞并劾之」; 같은 책, 권39, 공민왕 6년 8월 계묘朔 「以檢校大護軍崔龍角 私役全州良民七十餘戶 奪人土田 肆行侵漁 籍其家 充戍卒」

55) 이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李泰鎮, <醴泉 開心寺石塔記의 分析> 《歷史學報》 53·54합집, 1972.
武田幸男,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의 研究> 《朝鮮學報》 25, 1962.
蔡雄錫, <高麗時代 香徒의 社會의 性格과 變化> 《國史館論叢》 2, 1989.

隊, 車 18, 牛 1천이 투입되었다. 이는 각 군현 간의 토목공사로서 그 노동력 동원에는 戶長으로 대표되는 향리층과 隊正으로 대표되는 지방군 지휘자층이 관여하고 있다. 또 현종 22년에 이루어진 <정두사오층석탑조성 형지기>에 의하면 당시 석탑 조성을 위하여 약목군의 隨院僧俗 千餘名이 호장 부호장의 지휘로 석탑 재료인 돌을 운반하였으며, 여기에는 일품군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예들의 경우 屬縣이기는 하지만 지방관이 배제된 상태에서 향리들이 사원과 연결되어 석탑조성을 위하여 郡司를 중심으로 역을 동원하였다. 이 동원에는 일반 농민 외에도 하급 승려도 포함되어 있다는 자료적인 제한은 있지만, 이 사례들은 군현 차원의 거군적인 요역이 각 군현의 향리층과 주현군 지휘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것이다.⁵⁶⁾ 이러한 역은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에 그것을 견제하였다. 성종 때 崔承老가 사원 주도의 역사가 公役보다 더 급하다고 한 지적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⁵⁷⁾

2) 국가 차원 요역의 징발구조

국가 차원으로 추진된 대규모의 토목공사 등과 관련된 요역징발의 구조는 군현 차원의 요역징발의 구조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국가 차원의 역사에는 군인이 동원되기도 하였으며, 아주 커다란 역사가 아닌 경우 대부분의 역부는 역사가 있는 주변의 군현에서 징발되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역은 모든 군현민들이 똑같이 부담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국가 차원의 역은 군현 차원의 역과 달랐다. 국가 차원의 요역으로는 축

56) 光軍과 一品軍은 지방군조직의 일환으로 지방의 토목공사에 주로 투입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의 부역은 군역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7) 《고려사》 권85, 형법2, 禁劄, 성종 원년 6월 「正匡 崔承老 上書曰 (생략) 世俗以種善爲名 各隨所願營造佛宇 其數甚多 又有中外僧徒 競行營造 普勤州郡長吏徵民 役使急於公役 民甚苦之 願嚴加禁斷 令遠而安南安東 近而御事都省 檢劾罪其長吏以除百姓勞役」

성, 궁궐이나 관아의 영조, 사원의 영조, 수리시설 축조, 왕이나 사신 행차의 영송이나 支待, 왕릉의 건조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요역의 징발이라는 차원에서 가장 전형적이며 비교적 풍부한 사례를 갖고 있는 것이 궁궐의 영조와 사원의 영조이다. 궁궐과 사원의 영조와 관련된 요역징발은 항상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규모가 대규모이고 국가의 의지가 관철된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 요역징발의 전형적인 예이다. 고려시기 궁궐의 창건이나 중수의 사례로는 인종 6년 서경의 新宮, 인종 9년 궁궐의 중수, 의종 12년 9월의 白州 別宮, 충렬왕 5년 3월 竹板洞 新宮, 충선왕 원년 延慶宮, 충혜왕 후 4년 三峴의 新宮 등이 있다. 사원의 창건이나 중수는 고려 일대를 통하여 꾸준히 계속되었으며,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된 것만도 현종 때의 玄化寺·重光寺, 덕종 때의 奉恩寺, 문종 때의 大雲寺·大安寺·興王寺, 선종·숙종 때의 國淸寺·弘護寺, 예종 때의 千壽寺·安和寺 등의 창건 사례를 들 수 있다. 이것들은 대부분 고려중기에 이루어졌으며, 비교적 상세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반면 축성은 국방과 관련하여 항상 있었으며, 그 사례도 궁궐이나 사원의 영조에 비하여 훨씬 많았다.⁵⁸⁾ 그렇지만 축성은 그 자체가 민사적인 것보다는 군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현종 때 羅城 축조 등 몇몇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군인들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⁵⁹⁾ 구체적인 기록은 드물다. 궁궐과 사원의 영조 외에 비교적 구체적인 요역징발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로는 河渠나 防潮堤 공사 등의 수리시설공사,⁶⁰⁾ 원종 때의 造船,⁶¹⁾ 공민왕 때의 影殿役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요역징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차원 요역징발의 구조를 검토하고자 한다.

중앙 국가의 역사는 국가에서 임명된 董役官의 책임아래 이루어졌다.

58) 《고려사》 권82, 병2, 城堡.

59) 나성 축조에는 丁夫 二十三萬八千九百三十九人과 工匠 八千四百五十人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고려사절요》 권3, 현종 20년 8월)

60) 국가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인종 12년 7월 洪州 蘇大縣의 운하공사가 대표적 것이다. (《고려사》 권16)

61) 《고려사》 권19, 원종 15년 정월.

국가의 役夫 동원사례 중 그 동역관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덕종 2년 8월의 北境關防의 축성에는 平章事 柳韶,⁶²⁾ 예종 원년 9월 千壽寺 조성역에는 平章事 尹璣,⁶³⁾ 인종 6년 11월 신궁 건설에는 內侍郎中 金安,⁶⁴⁾ 같은 왕 9년 5월 궁궐중수에는 平章事 崔弘宰·參知政事 文公仁·知樞密院使 林景清,⁶⁵⁾ 같은 왕 12년 7월의 蘇大縣 운하공사에는 內侍 鄭襄明,⁶⁶⁾ 의종 12년 9월 白州 별궁의 영조에는 平章事 崔允儀·知奏事 李元膺·內侍 朴懷俊,⁶⁷⁾ 충선왕 원년 3월 康安·延慶宮 역에는 檢校中護 裴挺·內侍令 姜融,⁶⁸⁾ 충혜왕 후 4년 3월 신궁건설에는 鷹揚軍 金善莊,⁶⁹⁾ 공민왕 9년 7월 남경 천도 준비에는 前漢陽尹 尹李安,⁷⁰⁾ 같은 왕 22년 4월 壽陵役에는 宦官 金師莘,⁷¹⁾ 같은 왕 23년 6월 影殿役에는 贊成事 韓方信·評理 盧稹⁷²⁾ 등이 각각 역사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이들 중에는 내시나 환관 등 왕 측근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대체로 재상의 반열에 드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역사에 필요한 역부를 징발하고 일을 추진하는 권한을 국가(왕)로부터 위임받았다. 역부를 징발하고 동원하는 일은 군사를 지휘 통솔하는 병마통수권과 함께 국가(왕)의 중요한 권한이었다. 따라서 동역관들은 왕명을 대신하여 국가의 역사를 추진한 셈이다. 이들은 군현을 단위로 하여 役事에 필요한 노동력을 징발하였는데, 이 때 징발 대상이 되는 군현은 주로 役事가 있는 주변의 군현이었다.⁷³⁾ 董役官이 해당 군현에서 역부를 징발할 때에는

62) 《고려사절요》 권4.

63) 같은 책, 권8.

64) 같은 책, 권9.

65) 위와 같음.

66) 《고려사》 권16.

67) 같은 책, 권18.

68) 같은 책, 권33.

69) 《고려사절요》 권25.

70) 같은 책, 권27.

71) 같은 책, 권29.

72) 위와 같음.

73)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검토한다.

해당 군현의 수령과 향리층의 도움을 받았다.⁷⁴⁾ 또 원종 15년 정월 원의 일본정벌 준비를 위하여 軍船 300척을 만들 때에는 工匠과 役徒 30,500 명을 징발하기 위하여 大將軍 羅裕 등을 部夫使로 파견하였는데,⁷⁵⁾ 이것은 조선 자체의 감독을 담당한 관원과 역부 징발의 관원이 분리된 예이다.⁷⁶⁾ 이는 조선과 관련된 역부들 전국적으로 동원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차원의 역사이지만 그 규모가 작은 경우 그 감독을 해당 군현의 수령이나 향리층에 맡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명종 12년 3월 국가에서 정용군과 보승군을 全州에 파견하여 관선을 만들 때 全州司錄 陳大有와 上戶長 李澤民이 함께 역을 감독하였던 것이 그 예이다.⁷⁷⁾

다음으로는 국가 차원의 요역징발의 실태를 주요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 차원의 부역실태와 관련하여 가장 특징적인 것은 각종 역사에 군인이 동원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인이 우선적으로 징발되었던 사실이다.⁷⁸⁾ 군인은 일반 요역군에 비하여 더 조직된 노동력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토목공사에 동원하거나 통제하기가 용이하였기 때문에 군사적인 비상사태를 제외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적 토목공사를 비롯한 많은 역역에 동원되었다. 그렇지만 이 때 군인이 제공한 노동력은 군역이므로 일반 농민의 요역과는 다른 것이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군인이

74) 《고려사》 권118, 조준전, 禍王 14년 8월 「上疏(생략) 近來此法一毀 守令不知其州之戶口 按廉不知一道之戶口 當徵兵調役之際 而鄉吏欺蔽 招納賄賂 富壯免而貧弱行 貧弱之戶不勤其苦而逃矣 卽富壯之戶代受其苦 亦貧弱而逃矣 其任徵發者 憤鄉吏之欺蔽 痛加酷刑 割耳劓鼻 無所不至 鄉吏亦不勤其苦而逃矣 鄉吏百姓流亡四散 州郡空虛者 戶口不籍之流禍也 願今當量田審其所耕之田 以田多寡 籍其戶爲上中下 又戶分良賤 守令貢于按廉 按廉貢于版圖 朝廷凡徵兵調役 有所憑依 及時發遣 而守令按廉 如有違者 輒繩以理」

75) 《고려사절요》 권19, 원종 15년 정월 「(생략) 又遣大將軍羅裕等 爲諸道部夫使 徵集工匠役徒三萬五百餘人」

76) 원은 洪茶丘로 하여금 이 역을 감독케 하였으며, 고려에서는 侍中 金方慶을 東南道都督使, 右僕射 洪祿運을 羅州道指揮使로 임명하였다. (《고려사》 권19, 원종 15년 정월)

77) 《고려사》 권20, 명종 12년 3월.

78) 이것에 대하여는 이 글의 2장을 참고할 것.

동원되었던 역사의 사례는 제외하고 일반 역부의 부역실태를 부역시기·기간·파역시기·부역대상과 단위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⁷⁹⁾

국가 차원의 역부징발도 군현 차원의 역부징발과 마찬가지로 농한기에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재 남아있는 요역징발의 사례에서 그러한 원칙을 확인하기는 어렵다.⁸⁰⁾ 그렇지만 지금 남아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국가차원의 역사가 농한기라 할 수 있는 6, 7, 8월과 12, 1, 2, 3월에 집중되어 있어,⁸¹⁾ 토목공사를 위한 국가차원의 요역징발도 원칙적으로 농한기에 국한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罷役 시기가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3, 4월로 되어있어 농사가 시작되는 3, 4월이 되면 요역징발을 정지하였다는 것을 통하여도 확인된다.⁸²⁾ 이러한 원칙은 대체로 지켜졌지만, 지금 우리가 《고려사》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은 그것과 배치되는 것이 많다. 비록 정해진 부역 시기와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역부를 징발하고 방면하는 권한이 전적으로 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역사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무시되었던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79) 국가 차원의 토목공사에 동원된 역부에 대한 대우에 대하여는 의종 21년 3월 兼美亭 건설과 관련된 일화의 내용을 통하여(《고려사》 권18), 兼晉哲은 동원된 역부들이 스스로 식량을 조달하였다고 하였고(1980년 앞는문), 李貞熙는 가까운데서 징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에서 부담하였다고 하였다(1984년 앞는문).

80) 그것은 국가 차원으로 행해진 역사의 사례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남아있는 사례에서 확인되는 役事 시작 시기도 열 두 달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81)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 공사 중지 시기는 현종 16년 3월, 덕종 원년 3월, 문종 2년 3월, 5년 4월, 29년 4월, 37년 4월, 선종 7년 3월, 예종 12년 4월, 고종 12년 4월, 13년 4월, 공민왕 16년 4월, 19년 4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의종 21년 3월, 충렬왕 5년 3월, 충선왕 원년 3월에 역을 시작한 예외가 있으며, 충렬왕 6년 4월과 공민왕 17년 6월에는 파역의 건의가 묵살되기도 하였다.

82) 고려시기의 부역기간에 대하여는 뚜렷한 기록이 없는 가운데 기왕의 연구성과에서는 중국 당나라나 조선초의 경우를 바탕으로하여 20일 정도로 추정하고 있지만(이정희, 1984년 앞는문), 더 이상의 단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낼 수는 없다.

역사를 위해 징발된 노동력은 일반 役夫와 工匠이 주류를 이루었다.⁸³⁾ 공장은 이인로가 공암촌에서 먹을 만들 때에도 동원되었지만, 그 밖의 각종 토목공사에도 필수적으로 동원되었는데,⁸⁴⁾ 이들 공장 대부분은 부역층 공장이었다.⁸⁵⁾ 국가 차원의 역사를 위해 동원된 역부와 공장들은 대체로 공사 소재지 근처 군현을 중심으로 하여 군현단위로 징발되었다. 대표적인 예만 들면 다음과 같다. 현종21년 중광사와 나성의 축조에는 京城의 역부가 동원되었으며,⁸⁶⁾ 문종 21년 흥왕사가 낙성되었을 때 궁궐과 흥왕사까지에 彩棚을 설치하기 위하여 百司를 비롯하여 安西都護府·開城府·廣州·水州·楊州·東州·江華·長湍 등의 지역에서 노동력을 징발하였다.⁸⁷⁾ 또 인종 6년·7년 서경의 신궁 건설에는 西京民이 동원되었고,⁸⁸⁾ 같은 왕 12년 洪州 蘇大縣에서 운하를 팔 때에는 주변 군현에서 役卒 수천명이 징발되었으며,⁸⁹⁾ 충혜왕 후 4년 신궁이 건설될 때에는 서울 근처 군현의 丁夫가 동원되었다.⁹⁰⁾ 따라서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교주·양광도 지역의 군현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은 요역에 시달렸고⁹¹⁾ 이에 따라 요역의 감면도 자주 시행되었다. 교주도의 경우 목재가 많은 자연조

83) 《고려사》 권84, 형법1, 직제, 숙종 2년 「判 被差充丁夫雜匠 稽留不赴一日笞四十四日五十 七日杖六十 十日八十 十三日九十 十九日一百 二十三日徒一年 將領主司 各加一等」

84) 대표적인 예는 나성 축조에 丁夫 二十三萬八千九百三十九人和 工匠 八千四百五十人이 동원된 것이다. (《고려사절요》 권3, 현종 20년 8월)

85) 徐聖鎬, 〈고려전기의 공장〉 1990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86) 《고려사절요》 권3, 현종 21년 6월.

87) 같은 책, 권5, 문종 21년 정월.

88) 같은 책, 권9, 인종 7년 3월 「以西京民 勞於創闢 發倉賑之 免今年租稅」

89) 《고려사》 권16, 인종 12년 7월 「遣內侍鄭襲明 鑿河于洪州蘇大縣 以安興亭下海道爲衆流所激 又有岩石之險 往往覆舟 或有獻議 由蘇大縣境 鑿河道之 卽船行捷利 遣襲明 發旁郡卒數千人 鑿之 竟未就」

90) 《고려사》 권124, 朴良衍傳 「(충혜)王又起新宮于三峴 命良衍及金善莊閔渙等督役(생략) 點西江人戶輸瓦 又令惡少輩 奪人牛馬以輸 又發近京諸郡丁夫伐材浮江而下 人馬駱繹州郡騷然 農者輟耕」

91) 같은 책, 권78, 식화1, 貢賦, 睿宗 3年 2月; 같은 책, 권118, 趙浚傳; 같은 책, 권80, 식화3, 恩免之制 참고.

건 때문에 큰 역사가 있을 때마다 벌목하고 나무를 운반하는 가혹한 역에 동원되었다.⁹²⁾ 또 개경과 서경을 잇는 길 주변의 군현은 왕이나 사신의 행차가 잦은 지역으로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역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었다.⁹³⁾

한편 고려 중후기에는 역부의 징발이 道를 단위로 한 사례들이 많아 주목되는데, 이것은 고려시기 道制의 발달과정과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按察使의 역할이 증대하였는데, 고려말의 기록이지만 趙浚의 상소에는 역부의 징발시 안찰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⁹⁴⁾ 실제로 이색의 〈中寧山皇甫城記〉에 의하면 공양왕 때 장흥부사로 부임한 황보공이 왜구에 대비하여 축성을 하면서 안찰사 李原에게 그 사실을 고하자, 이원이 주위의 군현에 牒을 내려서 壯士 350명을 징발하였다. 이 경우에도 역부의 징발단위는 군현이었다.⁹⁵⁾ 일반 역부와 공장 그리고 국가의 역사에 수시로 동원되었던 군인 외에도 品從·其人·僧侶 등도 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이것은 일반 요역을 보완하는 것이었지만, 역시 국가가 장악한 주요한 노동력이었다.

4. 맏음말

요역은 그 운영과 관련하여 군현 차원의 역과 국가 차원의 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형태에 따라서 축성, 사원영조, 궁궐영조, 수리

92) 李貞熙, 1984. 앞논문.

93) 《고려사》 권80, 식화3, 진졸, 은면지제 참고.

94) 같은 책, 권118, 趙浚傳, 우왕 14년 8월 「上疏 古者 民年十六爲丁 始服國役 六十爲老而免役 州郡每歲 計口籍民 貢于按廉 按廉貢于戶部 朝廷之徵兵調役 如之諸掌」. 이 글은 식화지 호구조의 서문과 내용이 거의 같은데, 여기에는 按廉이 州郡과 戶部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95) 〈中寧山皇甫城記〉 「今年春二月 府使皇甫公 下車 父老陳其故 皇甫公曰是也 具告 按廉使李原 李公亦曰是也 下牒榜郡差壯士三百五十名」

시설축조 등 토목공사역(工役), 현물 부세의 조달과 운반에 관련된 貢役·輸役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요역은 군현 단위로 할당된 현물 부세의 대부분을 조달하고 운반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현물 부세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한편, 노동력 자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군역 등의 여러 역과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일반민이 국가에 부담하였던 3세 중의 하나였던 요역이 초과 징발되었을 때에는 租·布 등이 면제되었다. 고려시기 군현 단위의 부세 특히 공물의 조달·운반과 관련된 貢役은 군현 차원의 역 중 가장 정기적이며 중요한 것이었다. 군현 단위로 부과된 현물 부세의 조달과 운반에는 민의 요역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원활한 현물 부세의 조달을 위해서 지나치거나 급하지 않은 요역을 금지하였다. 군역과 요역은 모두 농민층을 기본으로 한 국가의 노동력지배의 일환이었다. 군역과 요역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구분되어 징발되었으며, 군인의 경우 본연의 임무는 아니었지만 국가적 차원의 대역사에 동원되어 力役을 부담하는 일이 많았다. 이때 군인이 제공한 노동력은 농민의 요역과는 다른 차원의 역, 곧 군역이었다.

군현 차원의 요역 중 가장 중요하고 또 정기적이었던 것은 군현 단위로 부과된 현물 부세의 조달과 운반이었으며, 지방 차원으로 추진된 토목공사와 각종 사신의 영송과 접대 역시 중요한 요역징발의 대상이었다. 군현에서 역부를 징발하고 부리는 일은 수령의 책임 아래 향리층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貢役이나 輸役 등은 군현에 부과된 각종 물품의 다양한 종류와 납부시기 때문에 거의 일년 내내 역에 동원되었으며, 그러한 역은 거의 정기적이었다. 따라서 이 역의 운영에는 일정한 분업이 이루어 졌다. 반면 군현 차원의 토목공사는 대체로 부정기적이었고 수령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料外的 역인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농한기에 추진하는 것이 관례였다.

국가 차원의 요역으로는 축성, 궁궐이나 관아의 영조, 사원의 영조, 수

리시설 축조, 왕이나 사신 행차의 영송이나 支待, 왕릉의 건조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가장 전형적인 것은 궁궐과 사원의 영조이다. 국가의 역사에는 재상급의 董役官이 파견되어, 역부를 징발하고 부리는 일을 하였다. 국가 차원의 역부동원도 농한기에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때 동원된 노동력은 주로 일반 역부와 工匠이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역사 소재지 근처의 군현을 중심으로 하여 군현 단위로 징발되었다.

이제 이 글의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우선 요역징발구조에 대한 검토의 대상을 고려 全時期로 하였기 때문에 고려중기 이후의 변화된 모습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고려중기 이후 고려사회의 변화에 따라 수취구조와 재정운영이 일정하게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요역징발구조 역시 변화했을 것이다. 특히 군현 내에서 특정 貢役을 분담하던 所의 감소와 소멸에 따라 일반 군현민들의 역 부담의 형태와 내용이 변화했을 것이 분명함에도 그것을 검토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당시의 사회변화와 관련하여 보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요역 징발구조의 중요한 부분인 요역징발 대상과 그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脚註에서 단편적인 의견만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이점은 요역과 군역을 중심으로 한 고려시기 국가의 노동력 지배구조와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것으로 당연히 검토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필자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미룰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이점은 고려시기 요역징발구조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방의 노동부대로 알려진 一品軍을 비롯한 군인들의 노동력 동원실태와 그 성격에 대하여도 단편적인 언급 밖에 하지 못하였다. 이것 역시 요역과 군역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고려국가의 노동력지배구조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